

#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(공사)

※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“수의계약”을 편의상 “입찰”로 표시합니다.

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공 사 명 : 화양면 장등마을 도로 정비
- 나. 위 치 : 전남 여수시 장수리 68~17-4 일원
- 다. 사 업 량 : 소파보수 A=154㎡, 아스콘 질삭후 덧씌우기 L=195m A=847㎡, 차선 도색, 도로표지병 36개, 아스폰(표충) 119톤
- 라. 사업기간 : 착공일로부터 25일
- 마. 공사금액

| 추 정 가 격    | 부 가 가 치 세 | 기 초 금 액    | 도급자<br>관급자재대 | 관급자<br>관급자재대 | 추 정 금 액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1,889,091 | 2,188,909 | 24,078,000 | 18,970,000   |              | 43,048,000 |

## 2. 입찰 집행방법

- 가.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www.g2b.go.kr)에 의한 전자입찰로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”에 의하여 집행합니다.
- 나.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,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대상입니다.
- 다.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)
- 마.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.
- 바.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,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-49호)」를 따릅니다.

| 국민건강보험료 | 국민연금보험료 | 노인장기요양보험료 | 퇴직공제부금비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  | -       | 432,632원  |

※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: 432,632원

## 3. 입찰서 접수 및 개찰

| 입찰서 접수개시              | 입찰서 접수마감              | 개찰 일시        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2026. 7. 15.(수) 09:00 | 2026. 7. 21.(화) 12:00 | 2026. 7. 21.(화) 14:00 | 개찰용PC |

- 가.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.
- 나.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,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다.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의사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라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,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, 직원이어야 합니다.  
재직 중인 임,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,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.

## 4.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(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)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『같은법 시행규칙』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,
- 나.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**지반조성·포장공사업<주력분야:포장공사>**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
- 다.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를 **여수시**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
※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, 개찰일 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.

## 5. 입찰보증금

- 가.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, “입찰보증금 지급각서”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## 6. 계약상대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.745%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”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, **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**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”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.
- 다. 예정가격은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”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±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“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”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.

## 7. 입찰의 무효

-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.

## 8.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사항이 적용됩니다.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「**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**」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**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**
- 나.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,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

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- 다. 계약 체결 시 “[붙임]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”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
## 9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**계약 체결 시에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- 나.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### 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**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**
- ② 재해 발생 시 **재발방지 대책**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**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**
- ④ 안전·보건 **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**

## 10. 기타사항

- 가.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
- 나.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다. 개찰 후 입찰(견적서 제출)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(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)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(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)하여야 합니다.
- 라.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.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(부가세 제외)의 2.5%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바. 입찰참가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, 시행

규칙, 회계예규, 고시, 통첩,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,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,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, 공고사항, 설계서(과업내용)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사.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(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)를 **우리시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)

아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.

자.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**도로시설관리과 노명훈(☎659-5112)**으로, 입찰에 관한 사항은 **회계과 김대현(☎659-3193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,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(☎659-3067) 및 홈페이지(www.yeosu.go.kr → 전자민원 → 공무원비리신고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 
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7월 일

여 수 시 재 무 관

■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10호 서식]

##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1쪽)

|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자 | 발주기관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발주내용    |      | [   ] 공사   [   ] 용역<br>[   ] 물품   [   ] 기타 |
|     | 수의계약 사유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| 소속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주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②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③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④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⑤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⑥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⑦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⑧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여 수 시 장 귀 중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